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 동의 절차 개선 안내

2011. 7



개인정보 활용 동의 절차 관련 개정 취지

-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대해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 시 ①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②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③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등 3개 항목을 제시하고 동의 획득
- ▶ 개인정보취급 위탁 시 ①수탁자 ②수탁업무의 내용 등 2개 항목을 동의 받거나 고지 혹은 통지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①제공받는자 ②제공·이용 목적 ③제공항목 ④보유 및 이용기간 등 3개 항목을 제시하고 동의 획득

- 그런데, 많은 기업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제3자 제공 동의 및 취급위탁 동의 등 3가지 동의 사항을 한번에 제시하거나 3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가입을 제한하여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였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11년 4월 개정되어, 동년 7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제3항 신설 : 제25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제공에 대한 동의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아야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①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취급위탁에 대한 동의를 분리하여 조치하고 ②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가입과 이용에 제한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또한, ③기존 회원이 회원 가입시 동의한 바 있는 제3자 제공 및 취급 위탁에 대해 동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조치해야 합니다.

- 동 안내문은 이와 같은 법개정에 따른 기업의 동의 철회 절차 조치사항 개선 사항을 보다 자세히 안내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본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국번없이 ☎118 (웹사이트)의 기업·공공기관 자문신청 메뉴



신규 회원 가입 등 개인정보 최초 수집시 조치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대한 동의 등 세 종류의 사항에 대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서비스의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위탁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개인정보 취급방침 상에 공개하거나 통지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대해 동의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됩니다.

수집시 동의 절차의 **올바른** 예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A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활용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성명, 이메일 주소	개인 식별, 공지 사항의 전달, 신상품의 소개	회원탈퇴 시 삭제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 로그	원활하고 상시적인 서비스 제공 분쟁 해결	회원탈퇴한 날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삭제

동의함

동의 안함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B게임사	게임 신상품의 소개 메일 발송, A사와의 제휴 상품 소개 메일 발송	성명, 이메일 주소	개인정보를 제공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삭제
C쇼핑몰	A사와의 제휴 적립카드 소개를 위한 텔레마케팅	성명,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를 제공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삭제

동의함

동의 안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위탁 관련 동의를 구분하여 조치

<개인정보 취급위탁 동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을 받는 자(수탁자)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D인포서비스	E사와의 제휴 상품 소개
F리서치	신규 이벤트 추진 시 설문 조사

동의함

동의 안함

제3자 제공 및 위탁 사항에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 가입이 가능해야 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각각 구분하여 동의받는 것은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두 가지에 대해서도 구분할 것을 권장합니다.

수집시 동의 절차의 잘못된 예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주)OO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활용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성명, 이메일 주소	개인 식별, 공지 사항의 전달, 신상품의 소개	회원탈퇴 시 삭제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 로그	원활하고 상시적인 서비스 제공 분쟁 해결	회원탈퇴한 날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삭제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B게임사	게임 신상품의 소개 메일 발송, A사와의 제휴 상품 소개 메일 발송	성명, 이메일 주소	개인정보를 제공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삭제
C쇼핑몰	A사와의 제휴 적립카드 소개를 위한 텔레마케팅	성명,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를 제공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삭제

<개인정보 취급위탁 동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을 받는 자(수탁자)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D인포서비스	E사와의 제휴 상품 소개
F리서치	신규 이벤트 추진 시 설문 조사

동의함

동의 안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위탁 관련 동의를 한번에 받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가입이 불가하도록 조치



기존 회원에 대한 조치 사항

- 기존 회원이 이미 동의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나 취급위탁에 대해 동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신규 회원과 동일하게 동의를 철회하더라도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 ※ 서비스 계약 이행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개인정보 취급위탁 사항은 동의를 받아야하는 위탁사항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자세한 내용은 Q&A 2번 참고).
- 이와 관련하여 기존 회원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취급위탁에 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지사항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이를 안내하도록 합니다.

동의철회 조치 예시 ①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취급 위탁 동의 철회 메뉴 신설

제공 업체명	제공 목적	제공 정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문의처
000 생명	업무 제휴에 의한 텔레마케팅 정보 제공	성명,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를 제공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삭제	동의 철회 하기
000 보험		성명, 이메일 주소	개인정보를 제공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삭제	

위탁 업체명	위탁 업무	제공 정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문의처
000 커뮤니케이션	신규 상품 소개를 위한 텔레마케팅	성명,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를 제공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삭제	동의 철회 하기
000 콜센터		성명,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를 제공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삭제	

동의 철회 절차 조치 예시 ② :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한 안내

회원 가입시 동의하신 바 있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00-0000
- 이메일 : 000@00.co.kr
- 웹사이트 : www.00.co.kr내 「개인정보 수정 메뉴」 활용



Q1.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개인정보 취급위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1.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개인정보 취급위탁은 다른 기관에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은 ‘제공받는 측의 사업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전달되는 것이며, “개인정보 취급 위탁”은 ‘제공하는 측의 사무처리’를 목적으로 다른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면서 개인정보도 함께 전달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취급 위탁에 따른 의무조치 비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개인정보 취급 위탁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③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④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수탁업체명 ②수탁 업무 내용을 알리고 동의 단, 서비스 이용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

Q2.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구분하여 동의를 받고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나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서비스 이용 계약의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공개하거나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이용에 대한 고객 응대 업무나 고객 정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의 유지·보수 업무 등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와 직접적인 연관된 개인정보 취급위탁이므로 별도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관련 규정 : 정보통신망법 제25조제2항

〈위탁 업무의 구분〉

구분	공개·통지로 갈음하는 위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위탁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와 계약을 맺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위탁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면 이용자가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와 계약한 주요 서비스 제공과는 무관한 부가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
조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자명 및 위탁업무 내용을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에게 위탁자명과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동의 획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 획득 외에도 에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해 이용자에게 안내
업무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계약을 맺은 경우 통신망 개통, A/S 등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업무 위탁 • 온라인 쇼핑몰이 이용자와 계약을 맺은 물품 판매 서비스를 완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배송 업체 대상 물품 배송 업무 위탁 •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통신서비스 개통을 위한 가입신청서 작성 등의 개인정보의 수집을 위탁 • 고객 정보 취급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를 SI업체에 위탁 • 연체 요금 정산을 위해 신용 정보회사에 채권 추심 업무 위탁 • 고객의 불만 처리 접수 및 서비스 안내 등을 위해 고객센터(콜센터)를 외부 업체에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나 온라인 쇼핑몰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자사 제품 소개 및 부가서비스 등의 텔레마케팅 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 일시적인 이벤트 혹은 경품 행사의 운영 업무를 홍보대행사에 아웃소싱하는 경우 • 포털 사이트 내 맞춤형 온라인 광고를 위해 포털 사이트 운영사가 온라인 광고 위탁 업체에 회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상기 위탁업무에 대해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획득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Q3.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요청하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구분해서 받아야 하나요?

A3. 그렇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구분해서 받아야 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아도 회원 가입에 제한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서비스 내용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없이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자는 서비스를 제한하는 사유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Q4. 개정 법률 시행('11.7.6) 이전에 가입한 기존 고객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취급·위탁에 대한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A4.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받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도 유효하므로 동의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회원들이 이전에 동의한 사항 중 제3자 제공 및 취급위탁 동의 사항에 대해서 철회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른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자는 이용자가 동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창구를 개설하고 이를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고 | 시행관련 법령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이용자의 동의를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5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제공에 대한 동의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아야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4.5> [시행일 : 2011.7.6]

제25조(개인정보의 취급위탁)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이하 "취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이하 "개인정보 취급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참 고 | 시행관련 법령

1.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2.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따른 제1항의 고지절차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목적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 목적을 벗어나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수탁자가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그 수탁자를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